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에 장애어린이 포함 명시 및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지자체 시책 마련 의무 신설 등〉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1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17.
3. 회부연월일 : 2025.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¹⁾의 이용대상인 “어린이”에 “장애어린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u>어린이</u> 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u>어린이</u>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략)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생략)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자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총 83,388개소로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 분포되어 있음.

<장소별 어린이놀이기구 현황(2024. 12. 31. 기준)>

구 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총 계
개 소 수	40,118 (48.1%)	10,926 (13.1%)	8,435 (10.1%)	7,565 (9.1%)	6,569 (7.9%)	9,775 (11.7%)	83,388 (100.0%)

그런데 일반적인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그 구조상 신체가 불편한 장애 아동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소통하며 놀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2015년 최초로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꿈틀꿈틀놀이터”가 설치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2023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 연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31곳으로 전체 놀이기구 중 약 0.0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023년 말 기준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0세 ~ 13세)의 인구 5,215,537명²⁾ 중 동일 연령대의 장애 인구는 61,516명³⁾으로 장애가 있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3)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는 어린이의 비율은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대상에 장애 어린이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 법체계의 통일성 및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표현을 명시하는 것에 관한 개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제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장애어린이가 비장애어린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어린이의 편의성을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장애어린이의 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현행법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장애어린이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사항을 규정⁴⁾하고 있고,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⁵⁾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대상인 어린이에 장애어린이와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비장애어린이 모두를 포함함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의 용어를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할 경우 오히려 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개정실익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역시 어린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실익이 낮으며, 장애어린이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장애인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9억 7,900만원, 2031년 35억 9,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4억 200만원(연평균 32억 8,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349

6)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전체 어린이 인구 대비 장애어린이 비율인 1.2%를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비용 중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